

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9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8. 5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안산시의 자살률감소와 자살예방 대책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자살예방센터(수탁자: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)의 위탁계약이 2015. 12월 종료됨에 따라
-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기 간 : 2016. 1. 1. ~ 2018. 12. 31. (3년)
- 장 소 :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길 5, 상록수보건소 3층
- 운영방법 : 민간위탁
- 운영인력 : 9명 (센터장 1, 팀장 1, 직원 7)
- 운영예산 : 450,000천원(2016년도)
※ 국비15,000 도비 52,300 시비 382,700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사무 :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사업일체
 - 지역사회 자살예방네트워크 활성화
 -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예방사업
 -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사업
 -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

- 노인자살예방사업
- 기타 안산시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
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
(자살예방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
- 안산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
-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5조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,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교육, 생명사랑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교육, 홍보 등 안산시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
- 「안산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.